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마쉬코리아보험중개

2. 제재조치일 : 2023. 2. 24.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준법감시기능 강화

내규「업무지침 표준」제6조에 의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준법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조직, 교육, 모니터링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금·료 정·청산과 같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상시감시 모니터링 기능이 각 소관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식별·분석·판별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사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보험료·금의 정·청산 등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내부통제정책 수립,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내부통제기준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마련

내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제2장 제4조에 의하면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본사에서 제공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해 적정성을 경영진에서 검토하여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지 않음

향후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 등 관련 내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 마련

내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제10조 3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및 준법감시활동과 관련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음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성과보상체계를 마련·운영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 강화

「보험업감독규정」제4-29조 제3항 및 내규「보험중개사의 업무지침 표준」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마쉬코리아보험중개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7.~'21.11.19. 기간 중 보험사에서 입금된 보험금·료의 계정구분 오류*로 29건의

재보험금을(747백만원)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89일까지 지연하여 보험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사가 입금한 보험금을 보험료 계좌로 입금처리하거나, 재보험사가 입금한 보험료를 보험금 계좌로 입금처리

향후 내규에 재보험금·료 송금기한을 명시하고, 정·청산 업무시 계정구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청산시 보험금·보험료 송금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 보험금 계정구분 방법 등

< 관련규정 >

1.「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3항